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4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정춘생·이해민·조 국

신장식 · 김준형 · 김선민

강경숙 · 김재원 · 차규근

황운하 · 서왕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공약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대담·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의 초청기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주체가 언론기관이 아니어서 초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

사결과를 기반으로 후보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언론기관이"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③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			
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			
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			
담 • 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1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u>기관이</u>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			
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 ⑭ (생 략)

⑤ ~ ⑭ (현행과 같음)